

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4. 25.(월)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규정 (안 제3조)

나. 수수료 징수 방법은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
(안 제5조)

다. 조 제목 변경 및 수수료 면제자의 조건과 법령 근거 명시 (안 제7조)

라. 수수료 요율 정비 (안 별표 1)

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 관련 수수료 삭제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수료 신설·변경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낙시터업 관련 수수료 신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준용하여 안마시술소 개설
수수료 상향

③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사무가 없는 경우 등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른 정비

다.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정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징 수 과

라. 입법예고 : 2022. 3. 3. ~ 3. 23.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의료법」 및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수수료 규정을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산업경제국 징수과장 김영미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2. 16.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 2022.1.13]]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12.9.21]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현행 조례)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1995.01.03 조례 제0040호]

(중략)

(일부개정) 2022.01.13 조례 제19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제2조(적용) 증명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2017. 5.11.>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5.11.><개정 2022. 1. 13.>

제4조(기준) 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면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④ <삭제 2017. 5.11.>

제5조(징수방법)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남양주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5.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7. 5.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증명) 중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1.01.12.> <개정 2013.08.09, 2017. 5.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개정 2009.05.07. 2017. 5.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등 <개정 2013.08.09, 2017. 5.11.>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표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표
5. 각각 해당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 신설 2012.01.1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 신설 2011.01.12.> <개정 2013.08.09>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 신설 2011.01.12. 개정 2017. 5.11.>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 신설 2011.01.12.>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호 신설 2011.01.12., 개정 2019.5.1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5.11.>

③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제8조

삭제 <2013.8.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미금시 및 남양주군 수입증지에 남양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